

국제적으로 본 아동 인권: 로HING야 난민아동을 예로

오 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前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인권은 어떻게 국제적 의제가 되었나?

현대적 개념의 인권은 유럽에서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후 싹을 피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발전하였다. 학문과 사상의 영역을 넘어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에 구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실제 국가의 이념으로 구현되었다. 그 후 인권 개념은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고 20세기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반드시 인권의 보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대체로 인정된다. 인권학자 잭 도넬리는 “민주국가는 비민주국가보다 평균적인 인권 보장에 월등히 나은 기록을 갖고 있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행동을 절제할 때만 민주주의가 인권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¹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자국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권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적용되어 온 주권평등(sovereign equality)의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인권을 존중하느냐 여부는 오랫동안 국내적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가 먼저 발전한 국가에서도 현대 인권의 핵심 요소인 자유와 평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는 국가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여성이나 소수인종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가 오랫동안 심각한 국내 문제였던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²

인권은 또한 사회적 개념(social construct)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인권의 침해와 차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좋은 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 사용 권한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다. 1930-40년대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이나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부의 민간인 대학살 같은 사례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인권문제가 본격적인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 대학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식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이하 유엔)을 창설하였다. 그해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 창립 회원국 간에 합의된 유엔 헌장의 서문은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시작한다.³ 유엔 헌장에는 유엔의 3대 핵심 분야(pillars)로 평화, 개발, 인권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에 개발과 인권이 핵심 분야로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사회가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한 기본적인 삶의 질, 인권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평화 유지될 수 없음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인식한 유엔은 1946년 최초의 산하기구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립하였다. 그 의장에는 유엔 창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미망인 엘리노어 루스벨

1)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hapter 13, 2013

2)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각각 1918년과 1920년이었다.

3)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Preambl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트 여사를 선임하였다. 인권위원회가 부여받은 임무는 사상 처음으로 인권협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협상이 필요함을 깨달은 위원회는, 인권협약을 장기적 과제로 남기고 우선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채택 시 루스벨트 의장은 “이 선언은 인류의 평화를 향한 열망이 뒷받침하고 있다. 나치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2차 세계대전의 씨를 뿌렸다는 깨달음이 오늘의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위한 동력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언의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고 규정하였다. 이 짧은 조항은 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권협약 체결을 위한 장기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로 1966년 2개의 인권협약을 체결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그것이다.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협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서방국가들과 공산국가들 간의 이념적 대립 상황 때문이었다. 흔히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공산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가치관에 따라 강력히 주장하였고, 서방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에 중점을 부여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회권의 실현에는 국가의 공공재정 능력이, 자유권의 실현에는 민주적 정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세계인권선언과 2개의 기본 인권규약을 합쳐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그 외에도 인권 분야에서 7개의 협약을 더 채택하여서 오늘 날 국제 인권법의 근간이 마련되었다.⁴ 7개 협약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인권법의 발전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엔의 인권 증진 노력은 크게 보아 국가의 인권 침해로부터의 시민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 권리의 국제적 보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이미 유엔이 창설되기 전에 시작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의 확산과 함께 커졌다. 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1919년 영국 여성 에글랜타인 쟈(Eglantyne Jebb)이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것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쟈 여사는 제1차 세계대전(1914-18)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군사적 봉쇄로 아동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모든 아동은 국적,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창설 이후 에글랜타인 쟈는 제네바로 활동 무대를 옮겨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작성하였다. 이 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에 의하여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으로 채택되었다.

2차 대전 후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출범한 유엔은 전쟁 중 많은 아동의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여, 후일 UNICEF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을 1946년 설립하였다. 또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에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에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총 30조의 짧은 선언에도 2개 항에 걸쳐 아동 권리를 언급하였다. 유엔은 제네바 선언을 확대 발전시킨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을 1959년 채택하였고, 이는 후일 아동권리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은 현존하는 9개의 유엔 인권 협약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⁵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

4)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 강제실종협약(2006) (출처: 외교부 주요 국제인권협약 현황)

5) 2023년 현재 196개 당사국이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숫자인 193개국 보다 많은데, 유엔 비회원국인 쿡 아일랜드, 니우에, 팔레스타인, 교황청이 가입하였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결과다.

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협약은 무차별(제2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제3조),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참여의 권리(제12조)라는 4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전문과 총 54개 조항에 규정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는 크게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다루지고 있다.

-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②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③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 ④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아동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권리 등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후 3개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가 추가로 채택되었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2000년),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2000년), 아동의 개인청원권(2011년)에 관한 의정서가 그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과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그치던 것을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만들었으므로, 아동의 권리는 국제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을 망라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아동의 의사 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인권협약과 마찬가지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주기적으로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심사,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양희 교수가 2003-13년 간 위원과 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5-6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난민법 제정(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년),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화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아동관련 예산 규모가 GDP에 비해 낮은 점, 높은 아동 자살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등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보편적 출산등록제의 도입,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다.⁶

유엔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 체결 후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활동과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0년에는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뉴욕)와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태국)가 각각 개최되었다. 2002년에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는 유엔 회의 역사상 최초로 400여 명의 아동들이 대표단으로 직접 참석하였다.⁷ 또한 1996년과 2001년에는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를 반대하는 세계회의가 스웨덴과 일본에서 열리기도 했다. 유엔 체제 내에서는 UNICEF 이외에도 WHO, UNESCO, ILO, UNHCR, UNDP 등 국제기구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다.⁸ 왜냐하면 아동이 보호 받고 교육 받을 권리를 행사하려면,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단계가 아직 낮아서 충분한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육과 의료혜택의 권리를 주장해도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나 OECD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에서도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개도국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아동의 80% 이상이 개도국에 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원은 보편적 아동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상에도 4번 목표(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 이외에 SDG 곳곳에 아동 권리의 실현이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반영되어 있다.⁹

6)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 모든 체벌의 금지, 보편적 출산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2021-23년 기간에 한국 국회의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7) 대한민국 아동 대표단의 유엔아동특별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최 아동특별총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8) 즉, 아동 문제는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유엔의 3대 핵심분야(three pillars) 중 2개에 걸쳐 있다.
 9) SDG의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 중 48개 세부목표에 아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번 목표 중 '5세 이하 아동의 질병', 5번 목표 중 '조기결혼 금지', 8번 목표 중 '아동노동의 금지', 16번 목표 중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로힝야 난민 아동의 예

국제적 차원에서의 취약계층 아동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로힝야 난민 아동의 경우를 예시하고자 한다.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Cox's Bazar)에는 약 1백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을 수용 중인 난민촌이 있다.¹⁰ 콕스바자는 원래 인도(오늘날의 방글라데시 포함)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벵갈만의 어촌으로, 18세기 총독이었던 하이럼 콕스의 이름을 딴 지명을 갖고 있다. 1947년 독립한 파키스탄에 속했다가 1972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자 그 일부가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웃한 미얀마로부터 로힝야족 난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규모로 이입되었으나 2017년 미얀마 내의 로힝야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수십만 명이 들어와 현재와 같은 1백만 명 규모의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되었다.

미얀마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유입 경로



출처: Save the Children(2017). Horrors I will not forget

로힝야 난민 사태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도와 버마(미얀마)가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던 19세기에 영국은 벵갈만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버마 라카인 주로 이주시켜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1948년 독립한 버마는 자국 내에 로힝야족이 계속 거주하는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얀마로 국명을 바꾼 후 군사정부는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등 탄압을 강화했다. 심지어 미얀마의 민주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도 미얀마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없이 로힝야 탄압을 비판만 할 수 없다고 변호하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미얀마인들에게 로힝야족이 오랫동안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은 난민사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증오심이 폭력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군과 민간인들의 로힝야 탄압은 국적 박탈 이외에도 집단학살, 성폭력 등 수많은 범죄행위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의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¹² 문제는 약 140만 명의 미얀마 내 로힝야족 중 70% 이상이 콕스바자로 탈출한 현실에서 이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데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난민 문제는

10) 필자는 2023년 8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의 세이브더칠드런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콕스바자는 난민촌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여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던 곳이다.
 11) 2019년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 관련 청문회 증언과 관련, 같은 해 12월 19일자 뉴욕타임스는 “Ms. Aung San Suu Kyi chided foreigners for not having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Myanmar’s complex ethnic and social history.”라고 보도하였다.
 12)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를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였다.

전쟁, 재난 등 난민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얀마 측이 본국 귀환을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로힝야 난민 사태는 다르다.

그렇다고 방글라데시에 영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1.5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에 1억6천만의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이다. 로힝야족이 인종적,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 국민과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가 인도주의 정신으로 국경을 열어 수많은 로힝야 난민의 생명을 구하였으므로,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설득해서 그들의 미얀마 복귀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³ 그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난민촌 내에 일체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이나 도로를 허용하지 않고 전기나 통신시설도 불허하고 있다.

1백만 로힝야 난민 중 절반인 50만 명 정도가 18세 이하 아동이다. 난민들은 대체로 성인 남자보다는 여성과 아동이 많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콕스바자는 특히 심하다. 아동들에게는 방글라데시 언어로 된 정식 교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 중에 교사 역할이 가능한 사람들 중심으로 임시적 교육이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들 중에 이미 청소년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교육도 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탈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로힝야 난민 아동들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난민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의 인도적 위기는 유엔이나 국제 NGO 등 130 여개 인도적 지원기관들의 활동과 지원으로 대처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유일한 생존수단인 난민들에게 콕스바자 내 33개 난민 캠프에서 식량, 보건의료 등 지원이 있는 것이다. 연간 총 1조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6,5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제공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아동 구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¹⁴ 학교를 대신한 ‘러닝센터’, 보건소, 다목적 청소년 아동 센터의 운영, 교사역량 강화, 백신 접종, 위기아동 사례관리, 식수 및 위생시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로힝야 사태를 포함한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난민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로힝야 난민 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최근에는 다른 여러 가지 국제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¹⁵ 인도적 지원 기구들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1백만 명의 로힝야 난민, 특히 50만 명의 난민 아동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13) 방글라데시 Sheikh Hasina 총리는 2020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로힝야 사태와 관련, “The problem was created by Myanmar and its solution must be found in Myanmar.”라고 발언했다.

14) 세이브더칠드런은 33개 난민 캠프 중 30개 캠프에서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인도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총 60만 명에게 지원을 제공해 왔다.

15) “Shifting global attention signals catastrophe for Rohingya refugees” (<https://www.arabnews.com/node/2403821>) Azeem Ibrahim, Arab News, 5 November 2023



필자 소개 오 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前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학력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정책학 석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비교정치학 디플로마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경력 現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現 제11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現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전공 석좌교수
前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前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